

●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-39호

「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(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-39호, 2026.2.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6년 02월 06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「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·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표시면”이란 제품의 겉면에 글자,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. 다만,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,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·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2. “포인트”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(활자의 기준 치수)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살생물제품은 법 제20조,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살생물제품에 한한다.

제4조(표시사항 및 표시방법) ①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.

③ 살생물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재검토기한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부칙 <제2018-242호, 2018.1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표시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제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살생물제품부터 적용한다.

□ 부칙 <제2024-91호, 2024.4.23.>

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□ 부칙 <제2026-9호, 2026.2.6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용기나 포장 및
첨부분서는 재고 소진 시까지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.